

#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

Singapore Non Tariff Barriers Issue

싱가포르,  
가금류 등 수입 육류에  
수의학적 위생 조건 추가  
(7월31일부터 시행)



## 수입 육류의 병원체 저감 처리제 사용 조건,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

싱가포르 식품청은 《식품 판매법(Sale of Food Act)》의 하위 규정인 《식품 규정 개정안 2022(Food (Amendment) Regulations 2022)》를 공식 관보에 공지하고, **개정 내용을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**고 밝힘.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수입 가금류, 돼지고기, 소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한 신규 수의학적 조건으로 '병원체 저감 처리제' 사용 기준이 추가됨

### ※《식품 규정 개정안 2022(Food (Amendment) Regulations 2022)》에 포함된 신규 수의학적 조건 [신규 규정 27A (병원체 저감 처리제)]

- 1) 본 규정에서 '병원체 저감 처리제'는 식품에 사용했을 때 식품의 미생물 번식을 줄이는 모든 항균 물질을 의미함
- 2) 4) 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육류에 병원체 저감 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됨
- 3) 표 17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은 병원체 저감 처리제를 포함한 육류는 수입, 판매, 광고, 제조, 위탁 또는 배송하면 안 됨
- 4) 다음의 경우 육류(다진 고기 또는 잘게 잘린 고기 제외)에 병원체 저감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음
  - a. 육류가 염장, 양념, 보존 처리 또는 이외 기타 가공 처리 되지 않은 경우
  - b. 허가된 도축장 또는 가공시설로, 비소매(non-retail) 식품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
  - c. 육류에 행굼, 담금, 뿌리기, 세척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  - d. 오염된 육류를 섭취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
  - e. 사용된 병원체 저감 처리제의 종류와 양, 사용 일자, 가공 과정 중에 사용된 단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
- 5) 해당 규정에서 '오염된 육류'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함
  - a. 청결하지 않은 표면과 접촉한 경우
  - b. 내장 적출 후에도, 눈에 띄게 대변이 섞여 있는 경우
  - c. 병든 동물의 육류

## 가금류 수출 가능, 수입 가금류에 대한 수의학적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

한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(HPAI) 발병으로 인해 2020년부터 가금류의 싱가포르 수출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음. 그러나 **최근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2022년 6월 24일 이후 생산된 가금류 제품(닭고기, 오리고기, 식용 달걀 등)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.** 이에 따라 가금류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적용되는 수의학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병원체 저감 처리제에 대한 신규 규정에 유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### ※ 「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주요 수의학적 조건」

1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바이러스 감염은 수출국의 신고 및 발생 보고가 필요한 질병임
2. 수출국은 수출 12개월 전부터 HPAI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하며, 수출 제품은 WOHAI 지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불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열처리가 완료되어야 함
3. 수출국은 질병 통제를 위한 AI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야 함
4. 원산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에서 유래된 육류이어야 함
5. 육류는 부검 및 사후 검사를 통과하고 감염성 및 전염성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동물에서 추출되어야 함. 이때 부검 및 사후 검사는 정부 소속 수의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수의사 또는 육류 검사관이 수행해야 함
6. 화학 방부제 또는 인체에 해로운 다른 물질로 처리되지 않은 육류이어야 함
7. 검사를 통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, 오염 방지를 위한 모든 예방 조치가 수출 전에 취해져야 함
8. 레토르트 가공 육류 제품(통조림 육류)는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서 상업용 멸균 열처리(멸균 수치가 Fo3이상인 멸균 공정)가 되었으며 실내 온도에서도 안정적이어야 함
9. 병원체 저감 처리제(Pathogen reduction treatments, PRTs)는 염장, 양념, 또는 보존 처리되거나, 이외의 다른 형태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날고기에만 사용될 수 있음. 병원체 저감 처리제 사용 가능 시설은 싱가포르 식품청(SFA)에서 승인한 PRT를 최대 허용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음. PRT는 적절한 위생 관리를 위해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, 오염된 육류를 섭취 가능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지 않아야 함**[신규 추가된 수의학적 요건]**

## 출처

SFA, SALE OF FOOD ACT 1973 FOOD (AMENDMENT) REGULATIONS 2022

SFA, VETERINARY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POULTRY AND POULTRY PRODUCTS